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21 -32 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제정이유

법률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인해 부모빚이 대물림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queen@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비밀준수)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9조(정보안내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의 부모 사망 신고 시 해당 가정에 이 조례에 따른 상속채무 법률 지원 정보를 리플릿 등을 통해 제공 및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td></tr>
<tr><td>연 번</td><td colspan="2"></td><td>신청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지원대상자</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td><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신 청 인</td><td colspan="5">(관계)</td></tr>
<tr><td>신 청 내 역</td><td colspan="5"></td></tr>
<tr><td>지 원 내 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td><td colspan="5"></td></tr>
<tr><td>진 행 사 항
및 결 과</td><td colspan="5"></td></tr>
</table>